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배터리산업 관련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05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3
IV. 검토의견	5
1. 총칙규정	5
2. 배터리산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8
3.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 및 정책지원단	11
4. 배터리산업정책 전담기관 지정 및 통계작성	15
5. 배터리산업 생태계 조성	18
6.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21
7. 배터리클러스터의 지정과 지원	25
8.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	28
9. 해외시장 진출 및 공급망 안정화	30
10. 배터리산업특별회계 설치 및 재정지원	3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9. 18.
3. 회 부 일 : 2025. 9. 19.

II. 제안이유

이차전지 중심의 배터리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크게 주목받고 있음.

세계 각국도 배터리산업을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배터리기술의 개발,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특히, 배터리를 이용한 응용 제품인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는 송·배전 등 발전소비 과정에서 전력효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가 전력안보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배터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배터리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지원,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및 운영, 금융 지원과 민관 투자펀드 조성, 생산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라.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전주기적(全週期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핵심 원료·소재 등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 촉진,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특히, 연구개

발 투자 및 기술 이전,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이 때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산업 불균형 완화에 기여함(안 제19조).

사. 정부는 배터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증을 위한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3조).

아.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배터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터리산업특별회계의 설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세제 및 금융 지원, 민관 투자펀드의 조성·운영, 생산보조금 및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이와 함께 금융 지원, 민관 투자펀드 조성, 생산보조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를 도모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IV. 검토의견

1. 총칙규정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터리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개발·실증·설계·제작·생산·가공·공급·서비스하거나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셀(cell), 모듈(module), 팩(pack) 등 배터리 완제품 나. 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 등 배터리 관련 소재 다.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배터리 소재 관련 핵심 광물 라. 배터리 관련 부품·장비 또는 설계, 지적재산권, 배터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마.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유지보수·이력관리 등 관련 서비스 바.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 배터리를 이용한 응용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용 제품 2. “사용후 배터리”란 전기자동차 또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에서 일정 기간 사용된 후 성능이 저하되어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3.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란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저장·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4. “배터리클러스터”란 배터리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배터리사업자”란 배터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개발, 기반시설 확충, 전문 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배터리사업자와 배터리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정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규정으로 동 제정안의 목적이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

배터리산업과 관련하여 광물 - 소재 - 셀 · 모듈 · 팩 등 배터리 제조의 전 과정과 관련 부품 · 장비 및 서비스 산업 등 동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배터리산업은 소재 · 부품 · 장비산업부터 유지보수 · 이력관리 서비스산업까지 포함될 수 있고, 일반적인 배터리 뿐 아니라 사용후 배터리까지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의규정에서 관련산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사용후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¹⁾과 「사용후 배터리의

1)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111, 2025.2.13.회부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²⁾이 회부되어 심사 중이며,

정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³⁾을 발표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므로,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40, 2025.5.17.회부

3) 관계부처 합동,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2024.7.

2. 배터리산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안 제5조·제6조)

제 정 안
제5조(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터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배터리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 전망 3. 배터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개선 방안 4. 배터리산업의 발전 기반 및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배터리산업 관련 원료·소재 등의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 6. 배터리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배터리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8. 배터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촉진 등 순환경제 구축 방안 10.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활용에 관한 사항 11.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배터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배터리산업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배터리산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5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안 제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배터리산업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⁴⁾으로서 배터리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배터리산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배터리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산업통상부는 배터리산업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2차전지산업을 포함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⁵⁾,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점⁶⁾을 고려하여

4)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등 6개 산업 지정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체계 내에서 배터리산업 관련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 및 정책지원단 (안 제7조·제8조)

제 정 안
제7조(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①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배터리산업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3. 배터리산업 관련 중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배터리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터리산업 육성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7. 배터리산업 관련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8. 배터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대책에 관한 사항 9. 배터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대책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배터리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배터리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배터리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

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배터리산업 정책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배터리산업 정책지원단(이하 “정책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책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7조는 배터리산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8조는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운영과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배터리산업 정책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임.

배터리산업이 성격상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 소관업무를 함께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 소속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부서로서 배터리산업 정책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배터리산업 정책 논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⁷⁾와의 역할 중복을 고려하여 위원회 설치와 역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가 금지되므로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신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전략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배터리산업 정책지원단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에 해당하여 「정부조직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배터리산업정책 전담기관 지정 및 통계작성 (안 제9조·10조)

제 정 안
제9조(배터리산업정책 전담기관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산업의 육성·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배터리산업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배터리산업정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지원 2. 배터리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3. 배터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4. 배터리산업 관련 시장 창출·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5. 배터리산업 관련 원료·소재 등의 국산화 지원 6. 배터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배터리산업 관련 제품 표준의 개발·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8. 배터리산업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9. 배터리사업자의 창업·연구개발 등 지원 10. 배터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배터리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9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터리산업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의 연구·조사·기획을 실시하는 배터리산업정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배터리산업이 가지는 소재·장비·부품 의존적 성격과 전후방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이 정책과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해 전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현재 운영 중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⁹⁾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배터리산업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인증, 운행 중 검사와 안전기준 충족 여부 검사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공단¹⁰⁾이 전담하여 수행 중이어서 별도의 전담기관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2011년 43개 회원사로 설립, LG 에너지솔루션·삼성 SDI·SK on·포스코 퓨처엠 등으로 구성

또한 제정안 제10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 분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는 내용으로, 전후방산업의 수요변화와 산업주기 등에 대한 정량적 관리가 필요한 배터리산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통계작성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전략산업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점¹⁰⁾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육성기반 조성 및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배터리산업 생태계 조성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 정 안
제11조(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및 셀·모듈·팩 등 완제품의 제조,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 배터리 응용 제품의 보급·활용 등 배터리산업의 전주기적(全週期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① 정부는 배터리 관련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배터리 관련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국산화 및 기술 자립 촉진)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핵심 원료·소재 등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촉진 및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내용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 하고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할 때에 기술개발, 사업화, 판로개척,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우선구매 및 공공수요 연계 실증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산 배터리 관련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공수요와 연계하여 배터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실증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배터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써 안 제11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의 전주기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이어서 안 제13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의 국산화와 기술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 분야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며, 안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산 배터리 관련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함.

배터리산업이 가지는 소재·부품·장비 의존적 성격과 전후방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함께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 국산화와 기술자립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배터리 산업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마련(안 제12조)과 국산화 및 기술자립 추진(안 제13조)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안 제14조)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국산 배터리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안 제15조)와 관련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인증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¹¹⁾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공공구매¹²⁾,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우선구매¹³⁾ 등 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8조(소재·부품·장비 수요창출)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 정 안
제16조(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지원 등)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술이전 중개, 기술평가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의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기술 거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원활화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사업자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2. 재직자 직업교육·능력개발 등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지원 3.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 및 고용 유지·안정 지원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확충 지원 5. 근로자 처우 개선 및 작업환경 개선 등 복지 증진 6. 수도권 외 지역 및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7. 배터리산업 분야별로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 등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지원

제 정 안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배터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배터리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비영리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5. 그 밖에 배터리산업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배터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배터리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터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6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안 제 17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게 함.

배터리산업의 기술의존성과 전후방산업에 대한 기술과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가 배터리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가 전략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¹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¹⁵⁾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5.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정안 제18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게 하는 내용으로 배터리산업의 기술집약적 성격을 고려할 때 산업에 특화된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교육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¹⁶⁾, 제정안과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교원 확충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략기술 관련 정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기술인력에 대한 취업지원
2. 제1호의 기술인력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등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우선지원
3.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인력양성기관에서 전략기술 관련 교육·실습을 하는 경우 전문인력등의 활용방안 마련
4.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7. 배터리클러스터의 지정과 지원 (안 제19조 · 제20조)

제 정 안

제19조(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때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의 설치를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배터리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배터리산업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그 밖에 배터리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그 밖에 배터리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배터리클러스터에 입주한 배터리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배터리산업과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
2. 배터리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생산 시설·설비의 설치·구축·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3. 배터리클러스터 내 배터리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수도권 외의 지역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 제19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배터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에 대해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배터리산업이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배터리산업에 특화하여 물리적 집적성을 보장하는 클러스터를 설치하고 이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배터리산업 및 관련산업의 집적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산업통상부는 배터리산업 분야 인프라 지원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¹⁷⁾ 이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점¹⁸⁾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전략산업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그 밖에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려는 자는 임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8.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 정 안

제21조(실증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 구축) ① 정부는 배터리 관련 기술 및 제품(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한다)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증을 위한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배터리사업자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 실증사업(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실증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증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 실증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배터리 안전·품질 인증 체계 강화) ① 정부는 배터리 관련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배터리 안전·품질에 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등 배터리 안전·품질 인증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내 배터리 안전·품질 인증 체계를 국제 표준과 조화롭게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국내 배터리사업자가 해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및 데이터 활용·공유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효율화·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터리 관리시스템이나 그 밖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배터리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 배터리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배터리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배터리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5. 그 밖에 배터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정 안

- ③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활용하는 배터리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는 배터리의 성능, 안전성, 잔존가치 평가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사업의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21조는 정부가 배터리 관련 기술과 제품의 실증을 위한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품질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안 제23조는 정부가 배터리 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배터리 기술은 그 유형과 용량에 따라 화재 등 사고위험성이 있는 한편 그 종류가 다양하고 발전 속도가 빨라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실증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안전·품질 인증체계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제정안에 따라 배터리산업 관련 실증사업과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사업의 근거를 범정할 경우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 예상되므로 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관련 배터리 인증체계 등은 「자동차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규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업무 소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해외시장 진출 및 공급망 안정화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 정 안

제24조(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2. 수출 상담 및 해외 마케팅 지원
3.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5.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조(자원외교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핵심 광물의 해외 탐사·개발·생산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투자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핵심 광물의 전략적 비축과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제협력 및 기술 보호)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내 배터리사업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배터리산업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물자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국제 표준의 대응 및 기술 보호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4.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국제협력 및 기술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24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과 관련하여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안 제25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 관련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추진하도록 함.

배터리산업 매출구성에서 내수시장 외에 수출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¹⁹⁾, 배터리 주요 소재에 희토류 등 해외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핵심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점²⁰⁾을 고려할 때 정부가 해외시장 진출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²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외국정부와의 양자·다자협력 등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점²²⁾을 고려하여 제정안 입법에 따른 구체적인 실익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9) 2024년 기준 이차전지 수출액은 82억 1,000만 달러로 15대 주요수출품목 중 14위를 차지

20) 2023년 기준 국내 희토류 수입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2.1%

2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와의 경제·무역·자원에 관한 양자·다자협력
2. 대체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3. 외국정부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동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
4. 공급망 위험 점검을 위한 인력·정보의 교류
5.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등의 개최
6.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음으로 제정안 제26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물자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 보호 조치를 마련하게 하는 내용으로, 배터리산업에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핵심기술 보호 필요성이 함께 있음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제협력 촉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편²³⁾,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물자의 해외 유출 방지와 관련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²⁴⁾ 현행 제도와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4)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 배터리산업특별회계 설치 및 재정지원

(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 정 안
제27조(배터리산업특별회계)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배터리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배터리산업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특별회계 보유재산의 매각 또는 운용 수입 6.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터리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2. 배터리산업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3. 배터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배터리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5.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6.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활용 확산을 위한 사업 7. 배터리산업 생산보조금 지원사업 8.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0. 그 밖에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특별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⑤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배터리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배터리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지원사업
2. 제20조에 따른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사업
3.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4. 그 밖에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배터리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지원사업
2. 제20조에 따른 배터리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사업
3. 배터리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 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세계 지원)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연구개발 촉진, 시설 투자 확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시설투자, 수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이나 대환, 보증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 지원의 대상,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민관 투자펀드 조성) ①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 투자펀드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 투자펀드의 조성·운영 방식과 지원대상 사업, 투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생산보조금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 생산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셀 등 배터리 제조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생산비용
2. 핵심 원료·소재의 국산화 또는 대외 의존도 축소를 위하여 소요되는 생산비용
3. 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고정비용 또는 환경설비 운영비용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생산비용
4.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의 내재화 또는 국내 생산 전환 시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
5. 배터리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 및 관련 인증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생산보조금의 지급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전기요금 지원) ①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배터리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배터리산업 관련 원료·소재·부품·장비 또는 제품의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가동할 것
2. 생산비용에서 산업용 전력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의 기간,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27조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배터리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세출로 하는 배터리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임.

미국²⁵⁾·중국²⁶⁾·일본²⁷⁾ 등 배터리산업 관련 주요국에서 이차전지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세제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배터리산업을 특별하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배터리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기반이 필요하므로, 특별회계 설치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국가재정 여건 및

25) 전기자동차 구매 시 세액공제제도(최대 대당 7,500달러 공제), 첨단제조세액공제제도(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 1kWh당 45달러 공제)

26) 전기자동차 생산보조금 예산(2,310억 달러), 전고체 배터리 분야 지원 예산(9억 달러) 등

27) 이차전지 생산설비 도입지원 예산(2,300억엔), ESS 도입지원 예산(400억엔), 전기차·배터리 등 내국생산 시 법인세 최대 40% 감면 등

다른 개별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므로,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신설 요건²⁸⁾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 제28조는 배터리클러스터 산업기반 지원사업 등이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세계적으로 배터리 산업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편²⁹⁾ 배터리 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임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우선선정 또는 면제를 통해 배터리산업 지원사업을 조기추진하는 것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8)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29) International Energy Agency, 「Batteries are an essential part of the global energy system today and the fastest growing energy technology on the market」, 2024.4.

산업통상부는 특례 인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략산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선정하거나³⁰⁾ 면제할 수 있는 점³¹⁾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의 통일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 제29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 연구개발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초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3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2(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배터리산업의 자본집약적 성격과 미국·중국·일본 등 관련 산업국가에서 배터리산업 관련 재정적·세제적 조치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경우 배터리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산업통상부는 지원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략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³²⁾³³⁾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조세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 제30조는 정부가 배터리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의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1조는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여 배터리산업 투자를 위한 민관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3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33) 2027년까지 1) 사업화시설·장비투자비용 관련 대·중견기업 15% / 중소기업 25% 세액공제
2) 연구개발비용 관련 대·중견기업 30% / 중소기업 40% 세액공제

배터리산업 성장에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정책금융기관과 민관 공동 투자펀드의 금융지원이 허용되는 경우 배터리산업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사업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다음으로 제정안 제32조는 정부가 배터리 제조와 수출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생산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3조는 정부가 배터리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배터리산업 시장규모의 지속적 성장³⁴⁾에 따라 주요 생산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정안과 같이 배터리사업자에게 생산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전기요금을 감면·보조하는 경우 국내 배터리사업자의 가격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보조금 지급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WTO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반하거나 이해 당사국과의 갈등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4) 세계 배터리산업 시장규모는 2024년 1,695억 달러에서 2032년 3,94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Fortune Business Insights, 「Battery Market Size, Share & Industry Analysis」, 2025.3.)

또한 전기요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결정권한이 있는 것³⁵⁾으로 정부는 감면주체가 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정안 심사시 정부조직법(법률 제20289호) 시행(2025.10.1.)에 따라 제정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60

35)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